

기업회계상의 선적지인도조건 충족하는 경우만 미착상품을 재고자산으로 반영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기업은 결산과정을 통해 특정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보고하는데, 명확한 결산을 위해서는 거래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업의 매출 및 매입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일 전후에 발생한 거래의 경우 어느 회계기간의 거래인지 정확하게 결정하여야 특정 회계기간의 매출, 매출원가, 재고자산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거래의 귀속시기 결정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미착상품의 장부계상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만 재고자산으로 반영

결산시점에 미착상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실무자들이 실수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FOB조건, CIF조건에 따라 재고자산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FOB조건이라면 무조건 선적시점에 재고자산으로 반영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는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이 아니다.

기말 현재 운송중인 미착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산 계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제7장 재고자산)은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매입자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목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계상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인식”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실무지침 7.5

특정 수량의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제16장의 제1절 ‘수익인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7.3)

(1) 미착상품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상품은 법률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서 재고자산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는 매매계약상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선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목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착상품에 대한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으로 인식할지의 여부는 법률적인 소유권 즉, 선적지인도조건 및 목적지인도조건의 매매계약상 거래조건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일반 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인식)에 따라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고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FOB조건 등은 미착상품의 재고자산 반영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국제상공회의소는 국제무역 거래 당사자들 간에 법률, 언어, 화폐제도 및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거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약칭INCOTERMS)’라는 무역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다.

INCOTERMS는 매수인 및 매도인의 운송수단 · 주체 및 검사 등에 대한 의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 및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규정으로 CIF와 FOB를 포함하여 13가지 거래 조건이 기술되어 있다.

즉, CIF와 FOB 등은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의무와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 및 비용의 부담 주체를 분류해 놓은 규정 중의 하나일 뿐이며, 해당 거래 조건이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적지 인도조건, 목적지 인도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FOB조건이라고 해서 모두 선적시점에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FOB조건일지라도 계약서를 검토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이 대부분 언제 이루어지는지, 거래 이후에도 매도자가 재화의 운송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지는 않는지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최종 판단 결과 계약조건이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미착상품을 매입자의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목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참고]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거래 종류

EXW-작업장 인도조건	CIF-비용 · 운임 ·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DEQ-부두인도조건
FCA-운송인 인도조건	CPT-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FAS-선측인도조건	CIP-운송비 · 보험료 지불인도조건	DDP-관세지급인도조건
FOB-본선인도조건	DAF-국경인도조건	
CFR-운임포함 인도조건	DES-착선인도조건	